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 출 일 : 2002. 10. 17.

○ 제 출 자 : 조선제의원외 4명

나. 회부일자 : 2002. 10. 17.

다. 상정일자 : 2002. 10. 22.

라. 의안번호 : 제 2002 - 42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설치로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원장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전문위원의 담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보좌 기능을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보좌 기능으로 조정. (안 제4조 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전문위원의 역할 및 사무처리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생 략

5. 토론요지

○ 생 략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전문위원의 역할 및 사무처리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생 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생 략